

제 2021 - 100호 2021. 08. 19.		가 정 통 신 문  2021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재안내	전 라 고 등 학 교 <a href="http://www.jeolla.hs.kr/">http://www.jeolla.hs.kr/</a> 교무실 251-4902 학생부실 251-4906
-----------------------------------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항상 자녀 교육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변경된 고사 시정표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필평가 인정점부여 기준 및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학년 일시		3학년		
교시		8/25 (수)	8/26 (목)	8/27 (금)
1교시	세계지리/ 물리학Ⅱ		경제수학/ 미적분	실용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권문화
2교시	세계사/ 화학Ⅱ		영어 회화	생활과 과학
3교시	정치와 법/ 지구과학Ⅱ		심화국어/ 고전읽기/ 기하	언어와 매체
4교시	생활과 윤리/ 생명과학Ⅱ			

### <2021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시정표>

구 분		시 작	끝	비 고
조회	출결 확인	08:20	08:27	출결사항 기재, 모든 전자기기 제출
1 교시	안내방송	08:27	08:30	감독교사 입실, 전체 안내방송
	문답지 배부	08:30	08:35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8:35	09:25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2 교시	문답지 배부	09:35	09:4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9:40	10:3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3 교시	문답지 배부	10:40	10:35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0:45	11:35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4 교시	문답지 배부	11:45	11:5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1:50	12:4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 정기고사 중 학생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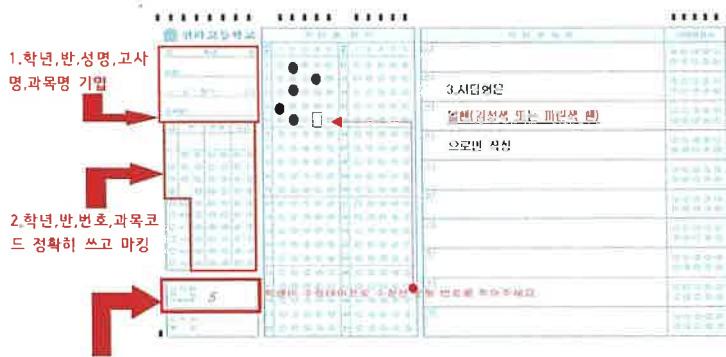
## 시험 시작 전, 중, 후의 유의사항

- 시작 전  
가.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 또는 옆에 가지런히 정리정돈 함.  
나. 고사기간 중 교실 내 반입금지물품(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PC(태블릿 PC 등), 통신(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통신·결제(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은 소지가 불가하며, 소지 시 1교시 시작 전 담임교사 또는 감독교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부정행위임.  
다.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받은 후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를 요구하고 이상 없을 시 본령이 울릴 때까지 대기함.
- 시험 중  
가. 시험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화장실 및 치료 등)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복도 감독관과 동행함.  
나. 답안지는 시험 종료 시간 5분 전까지는 가급적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시험 종료 직전 5분 안) 수험생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답안지 교체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자율 학습 시 : 조용하게 자기 공부만, 타 학생 시험에 방해하지 않기(소란, 이동 금지 등)
- 시험 종료 후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시험지는 원쪽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감독교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대기함.  
나. 종료령 후 답안작성 시 부정행위임을 주지할 것.

##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가. 선택형 답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진하게 작성함.  
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펜을 사용하여 예비마킹을 할 경우 펜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고사 시간에 선택형에 한해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후 감독교사의 확인을 받은 문항만 정답수정을 허용함. 이때, [선다형 문제 수정번호]란에 수정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라.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함.  
마. 서답형 및 서술형 답란에는 검정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작성 함.  
바. 서답형 및 서술형 수정 시 두 줄을 평행하게 굽고 빙 공간에 작성함.  
사. 서답형 및 서술형 답안작성 시 연필, 샤프펜,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아. 서술형 답은 답안지 뒷면에 작성하며 서술형 번호를 작성한 후 해당 번호에 답안을 작성해야 함.

### - 정기고사 답안지 작성 안내 -



-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문항 번호 적는 곳
- 예비 마킹 절대 불가(예비 마킹 시 오답 처리됨) - 이미지 스캔방식으로 채점
- 답안지 작성 시 마킹을 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의사항

- 부정행위 유의사항  
가. 시험기간 중 교실 내·외에서 반입금지물품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이므로 1교시 시작 전에 담임 또는 감독교사에게 제출해야함.  
나.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교직에 의거하여 처벌 및 적발된 시점까지 응시했던 당일 고사과목은 모두 0점 처리함(3교시에 적발될 경우 당일 1,2,3교시 평가과목 0점 처리)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다.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라.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마.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지필평가의 결시자 인정점 처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 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와 인정비율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인정점 산출 방법에 따라 평가 인정점을 처리한다.
2. 지필 평가의 인정 기준점수 산출 (환산 전 점수 기준)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의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한다.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 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평균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 4. 인정비율

- 가.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1). 천재지변, 전염병(격리수용),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전염병의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
  - 2). 병역 관계 등 공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증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나.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부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여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라. 0점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 (해당과목에 한함)
  - 2). 상기 1, 2, 3-가 이외의 결시

**5.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p>&lt;유의사항&gt;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p>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p>&lt;유의사항&gt;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p>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사),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임상증상자①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②를 확인③후 등교 허용 가능

①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③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80%

<b>기타결석 (감염 우려)</b>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장 판단	80%
<b>미인정 결석</b>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위의 상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b>출결</b>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b>평가</b>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b>증빙 자료</b>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필(수행)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인정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한 의심 증상 학생 결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의심 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를 제출
  2.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및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

2021년 8월 19일

전라고등학교장